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 
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07
----------	-----

2022. 11. 30.(수)  
정책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2년 10월 31일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11월 23일

-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종숙 보건환경연구원장)

가. 제안사유

-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라 대기오염의 경보 대상 오염물질에 미세먼지 외에도 오존(O<sub>3</sub>)을 포함하고, 예보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마련하는 한편, 현행 대기오염 경보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명 변경
  - (현행) 「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」
  - (개정) 「충청북도 대기오염 경보 및 예보에 관한 조례」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  - 미세먼지(미세먼지, 초미세먼지), 오존, 예보 및 경보 등
- 도지사, 시장·군수 및 도민의 책무(안 제3조)
- 예보의 내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(안 제4조, 제5조)
- 경보 대상지역, 내용 및 기준, 조치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8조)
-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노력(안 제9조)
- 정보제공시스템의 운영(안 제10조)
- 시·도간 협력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, 제12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 (김대진 수석전문위원)

### 가. 제출배경

- 현행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에 한정하여 미세먼지 경보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,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제2조는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오존(O<sub>3</sub>)까지 포함하고 있음.
- 이에 대기오염의 경보 대상 오염물질에 오존을 포함하고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사항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한 것임.

## 나. 주요내용 검토

### ○ 조례의 제명 변경

- 본 조례개정안은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인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'미세먼지'로 한정된 제명을 '대기오염'으로 확대하여 개정하는 것은 조례의 목적 및 내용에 부합함.

### ○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.

- 현행 조례에서 미세먼지에 한정하였던 용어 정의를 개정 제명 및 조문에 맞추어 대기오염, 미세먼지, 오존 등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본 조례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위해 필요함.

### ○ 안 제3조는 도지사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.

- 도지사는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도민은 미세먼지 및 오존 저감을 위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, 대기오염은 도지사의 노력만으로는 저감되기 어렵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노력 또한 필요하므로 도지사와 도민 모두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필요함.

### ○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대기오염 예보의 내용 및 기준, 예보에 따른 조치, 예보 및 경보 대상지역을 규정하고 있음.

- 대기오염 예보의 내용 및 기준은 환경부의 '고농도 미세먼지·오존 대응 매뉴얼'과 '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'에 준하여 적정하게 규정되었음.
- 또한, 대기오염 예보결과를 도민에게 알릴 수 있다는 규정과 도내 전 지역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적극적인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임.

- 안 제7조는 경보의 내용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,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7에 따른 것으로 법적·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음.
- 안 제8조는 대기오염 경보 발령시 별표 2에 따라 단계별로 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, 이는 정부의 '고농도 미세먼지·오존 대응매뉴얼'과 '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'에 준하여 적합하게 규정되었음.
-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노력, 정보제공 시스템의 운영, 시·도간 협력,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  -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차량운행 자제, 사업장 또는 공사장 운영자의 노력을 규정하고, 도지사는 주민에게 실시간 정보시스템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과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인근 시·도와의 협력, 대기측정망 확대 설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, 이는 대기오염 저감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며 법적·내용적으로 타당함.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에 한정하여 미세먼지 경보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「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」를 「충청북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」로 전부개정함으로써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에 오존을 포함하고 효율적인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를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.
- 개정 조문에 대한 검토 결과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법적·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으며, 본 조례개정안 시행을 통해 도내 대기오염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## 충청북도 미세먼지 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미세먼지 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충청북도 대기오염 예보 및 정보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충청북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기오염 예보 및 정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대기오염”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대기가 오염된 상태를 말한다.
2. “미세먼지”란 입자의 크기가 일정기준 이하인 먼지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 - 가. 미세먼지(PM-10) : 입자의 크기가  $10\mu\text{m}$  이하인 먼지
  - 나. 초미세먼지(PM-2.5) : 입자의 크기가  $2.5\mu\text{m}$  이하인 먼지
3. “미세먼지(PM-10, PM-2.5) 농도”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내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.
4. “오존( $\text{O}_3$ )”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.
5. “오존 농도”란 도내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오존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.

6. “예보”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를 충청북도민(이하 “도민이라 한다)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.
7. “경보”란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도민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 등의 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와 시장·군수는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상황전파, 경보의 발령 및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,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를 저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② 도민은 도와 시·군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에 대한 대응 및 저감을 위한 시책과 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예보 및 경보 대상지역의 미세먼지 및 오존 측정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예보 및 경보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제4조(예보의 내용 및 기준) 대기오염 예보의 내용과 기준, 행동요령은 별표 1과 같다.

제5조(예보에 따른 조치) 도지사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대기오염 예보결과를 정보제공 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민에게 알릴 수 있다.

제6조(예보 및 경보 대상지역)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는 도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경보에 대해서는 발령권역을 세분할 수 있다.



제7조(경보의 내용 및 기준)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

② 미세먼지 경보는 "주의보"와 "경보"로 구분하고, 오존 경보는 "주의보·경보·중대경보"로 구분하며, 발령 및 해제기준은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7에 따른다

③ 제1항에 따라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.

1.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
2. 대기오염 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
3. 대기오염 경보단계별 조치사항
4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 등) ① 도지사는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경보 단계별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시장·군수, 지역교육청장, 도민, 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한 때에는 그 시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.

제9조(대기오염 개선 노력) ①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경보가 발령되면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여 대기오염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②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의 운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환경개선, 연료사용량 감축, 조업시간 조정 등 대기오염물질의

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제10조(정보제공시스템의 운영) 도지사는 주민이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를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제공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.

제11조(시·도간 협력) 도지사는 경보 발령에 따른 주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인근 시·도와 협력하여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12조(예산지원) 도지사는 대기오염의 예보 및 경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의 확대 설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기오염의 예보 및 경보제도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대기오염 예보내용 및 기준(제4조 관련)

가. 미세먼지

예보내용		등 급( $\mu\text{g}/\text{m}^3$ )			
		좋음	보통	나쁨	매우 나쁨
예보 물질	미세먼지 (PM-10)	0~30	31~80	81~150	151 이상
	초미세먼지 (PM-2.5)	0~15	16~35	36~75	76 이상
행동 요령	민감군*	정상적 야외 활동	실외활동에는 특 별히 행동에 제 약을 받을 필요 는 없지만 몸 상태에 따라 유 의하여 활동	장시간 또는 무리 한 실외활동 제한,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	가급적 실내 활동, 실외활동은 의사와 상의
	일반인	정상적 야외 활동	정상적 야외 활동	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, 특 히 눈이 아픈 증상 이 있거나, 기침이 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 외활동을 피해야 함	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, 목의 통증과 기침등의 증 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해 야 함

\* 민감군 : 어린이, 노인, 천식 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

나. 오존

예보내용		등 급(ppm,1H)			
		좋음	보통	나쁨	매우 나쁨
대상 물질	오존 (O3)	0 ~ 0.030	0.031 ~ 0.090	0.091 ~ 0.150	0.151 이상
행동 요령	민감군	-	· 실 외 활 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 는 없지만 몸상 태에 따라 유의 하여 활동	· 장시간 또는 무 리한 실외활동 제한	· 가급적 실내활동
	일반인	-	-	· 장시간 또는 무 리한 실외활동 제 한 특히 눈이 아 픈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 을 피해야 함	· 실외에서의 활동 을 제한하고 실내 생활 권고

※ 오존의 농도산정 시간기준은 1시간 기준

[별표 2]

대기오염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(제8조제1항 관련)

경보단계	도민 건강보호	대기오염 개선 노력
주의보	<p>가. 민감군(어린이·노인·폐질환 및 심장질환자)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</p> <p>나.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(특히, 눈이 아프거나,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)</p> <p>다. 부득이 외출 시 황사(보호)마스크* 착용(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)</p> <p>라.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</p> <p>마. 유치원·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</p> <p>바.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</p> <p>사. 공원·체육시설·고궁·터미널·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 하는 시민에게 과격 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</p> <p>아.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p>	<p>가.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(비상용차량 제외)</p> <p>나.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</p> <p>다.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</p> <p>라. 주·정차시 공회전 금지</p> <p>마. 도로 물청소**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</p> <p>바.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</p> <p>사.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 중지 권고</p> <p>아.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</p>
경보 중대경보	<p>가. 민감군(어린이·노인·폐질환 및 심장질환자)은 실외활동 금지(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)</p> <p>나.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(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)</p> <p>다. 부득이 외출시 황사(보호) 마스크* 착용</p> <p>라.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</p> <p>마. 유치원·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, 수업 단축 또는 휴교</p> <p>바. 중·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</p> <p>사.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</p> <p>아. 공원·체육시설·고궁·터미널·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 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</p> <p>자.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p>	<p>가.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(비상용차량 제외)</p> <p>나. 자동차 운행 제한(부제 운행 등)</p> <p>다.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</p> <p>라. 주·정차 시 공회전 금지</p> <p>마. 도로 물청소**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</p> <p>바.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</p> <p>사.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 중지 명령</p> <p>아.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</p>

비고 1. \* 미세먼지만 적용됨  
 2. \*\* 오존경보시에는 시행하지 않음.

## 관련법령 발취

### □ 대기환경보전법

제8조(대기오염에 대한 경보) ① 시·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2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(이하 “환경기준”이라 한다)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·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·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하거나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령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.

④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, 대상 오염물질, 발령 기준, 경보 단계 및 경보 단계별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
제2조(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등)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.

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은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.

1. 미세먼지(PM-10)
2. 초미세먼지(PM-2.5)

### 3. 오존(O3)

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는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,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1. 미세먼지(PM-10): 주의보, 경보
2. 초미세먼지(PM-2.5): 주의보, 경보
3. 오존(O3): 주의보, 경보, 중대경보

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보 단계별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역의 대기오염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.

1. 주의보 발령 : 주민의 실외활동 및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 등
2. 경보 발령 :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, 자동차 사용의 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
3. 중대경보 발령 :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 요청,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

## 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

제13조(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)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발령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
2. 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
3.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조치사항
4. 그 밖에 시·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4조(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)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별표 7과 같다.

**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(제14조 관련)**

대상 물질	경보 단계	발령기준	해제기준
미세먼지 (PM-10)	주의보	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-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$\mu\text{g}/\text{m}^3$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	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-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 $\mu\text{g}/\text{m}^3$ 미만인 때
	경보	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-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$\mu\text{g}/\text{m}^3$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	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-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$\mu\text{g}/\text{m}^3$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
초미세 먼지 (PM-2.5)	주의보	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-2.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$\mu\text{g}/\text{m}^3$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	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-2.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$\mu\text{g}/\text{m}^3$ 미만인 때
	경보	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-2.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$\mu\text{g}/\text{m}^3$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	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-2.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$\mu\text{g}/\text{m}^3$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
오존	주의보	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.12ppm 이상인 때	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.12ppm 미만인 때
	경보	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.3ppm 이상인 때	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.12ppm 이상 0.3ppm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
	중대경보	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.5ppm 이상인 때	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.3ppm 이상 0.5ppm 미만인 때는 경보로 전환

**비고**

-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-10 또는 PM-2.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
- 오존 농도는 1시간당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하며,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 농도가 1개소라도 경보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